

보도 일시	2023. 2. 5.(일) 12:00 2023. 2.6.(월) 조간	배포 일시	2023. 2. 5.(일)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초경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최충운 (044-202-7528)

새마을금고·신협,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 심각

- 중소기업기관(새마을금고·신협) 기획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성차별 등 다수 확인, 노무관리 실태도 취약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5.(일) 중소기업기관(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보고, 불법·부조리 근절을 통한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 제기, 감독청원 등 감독 필요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22.9.27, 보도참고자료 참조)

☒ 기획감독 실시 개요

- (대상) 새마을금고 · 신협 총 60개소(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 (일시) '22년 10월 ~ '23년 1월
- (방식)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 주관, 현장 점검 등 실시
- (내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병행실시

감독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 재확인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와 총 929백만원의 체불임금,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실태가 확인되었다.

* 감독대상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❶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되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하였다.

*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사법처리),
신고 당사자 조사 미실시(과태료 부과)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

■ 상무, 과장 등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

ex)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발언

■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

■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

· (참고 1) 근기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고 2) 고평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❷ 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되었다.

☑ 비정규직 차별·고용상 성차별 사례

-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미지급
-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
- 여성 근로자에게만 피복비 미지급(남직원에게만 1년 50만원 지급)
- 세대주에 해당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 미지급
- (참고 1)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고 2) 고평법 제9조(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29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854백만원(711명, 44개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백만원(58명, 10개소), ·퇴직금·퇴직연금 15백만원(40명, 9개소) ·기타 주휴수당 등 9백만원(20명, 8개소)

④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 모성보호 규정 위반 사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 외 근로(3개소)
 - ↳ 근기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휴일 근로(1개소)
 - ↳ 근기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적 기준(10일)보다 미달하여 부여(2개소)
 - ↳ 고평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8개소)
 - ↳ 근기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배제를 통한 불리한 처우(1개소)
 - ↳ 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략)

- ⑤ 그 외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

- ✓ "직장상사 대학원 레포트 및 논문 대필,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명 퇴사 중용, 자녀 학교 숙제 및 기타 폭언 등"
- ✓ "여직원에게만 시키는 커피 심부름과 설거지. 한 번 감사가 온 적 있는데 그때는 감사 눈치를 본 건지 남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 ✓ "일년 동안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0일인 직원이 대다수임. 연차휴가사용 촉진 제도를 마련하면 근무환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정책실장 주재 중소기업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 개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강하게 주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기관의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이 주요 중소기업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정한 실장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중소기업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 * 국내 4대 중소기업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임원급 회의
(2.3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에 참석한 중앙회 임원들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회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제재 강화, 온라인 제보시스템 운영, 조직 쇄신 등에 대한 노력을 확산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상습체벌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김초경 (044-202-7553)
<총괄>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충운 (044-202-7528)
			주무관	강송훈 (044-202-7531)
<공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황청순 (02-2250-5862)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공용상 (02-2250-588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한삼남 (032-460-4660)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함지희 (032-460-466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최태식 (051-850-6461)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심원영 (051-850-646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문화순 (053-667-6287)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정우성 (053-667-628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장영욱 (062-975-6376)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김창현 (062-975-637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2-480-6280)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김형남 (042-480-6329)

- ▲ “새마을금고 내 직장 갑질 심각...이사장이 왕처럼 군림”
(’22.2.6. 연합뉴스)
- ▲ “임산부에 음주 강요...새마을금고 직장갑질”
(’22.2.6. 세계일보)
- ▲ “팔짱 끼고 얼차려 주고”...“지역 신협 간부 추행·갑질”
(’22.3.2. KBS)
- ▲ 구즉신협 직원들 “성추행·갑질 의혹 가해자 퇴출해야”
(’22.3.17. KBS)
- ▲ “상사에게 순종하고, 반문하지 말라” 내부엔 6대 지침까지
(’22.8.23. MBC)
- ▲ ‘밥 짓고 빨래하라’...새마을금고서 성차별적 갑질 논란
(’22.8.24. 연합뉴스)
- ▲ ‘갑질 논란’ 불거진 새마을금고..“신고할테면 해보라”
(’22.8.28. MBC)
- ▲ 새마을금고 ‘또’ 갑질 의혹...“이사장 친인척, 승진 특혜”
(’22.9.18. 서울신문)
- ▲ 새마을금고 갑질 논란 계속...“이사장 자녀 청첩장 접느라 야근”
(’22.9.18. 연합뉴스)
- ▲ 성추행에 부당지시...신협 갑질 의혹
(’22.10.14. MBC)
- ▲ “새마을금고, 갑질 신고 직원 색출·회유”...피해 사례 잇따라
(’22.12.4. SBS)
- ▲ 전북 지역농협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 극단 선택
(’23.1.25. 연합뉴스)
- ▲ 30대 농협 직원 ‘의문의 죽음’...“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23.1.25. 연합뉴스)